









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 및 공개의 목적

에너지 저효율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고, 공공부문에서 성공사례 발굴하여 민간부문으로 녹색건축물 확산 주도

에너지 소비량 보고

- •에너지소비량 보고(매분기)
- •에너지소비량 온라인 공개
- •에너지 저효율 건축물 성능개선 요구

성능개선 사업 추진

- •건축물 노후도 평가지원 (노후도, 거주성능, 안전성능, 에너지성능 등)
- •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
- •사업이행관리

사후 유지관리

- •사후 유지관리 수행
- •성능개선 이행 모니터링



에너지소비량 보고 및 공개 절차

※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3조의2

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에너지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에너지소비량을 검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에너지소비량 제출요청

소비량 제출 요청 공문발송(분기)

국토안전관리원

에너지소비량 보고

'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시스템(PEIS)' http://peis.greentogether.go.kr 월별 에너지 사용량 입력

기관담당자

입력값 검토

에너지소비량 입력값 검토 (승인 or 보완요청)

국토안전관리원

최종제출 확인

최종 제출 확인여부 검토

국토안전관리원

에너지소비량 공개

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(반기)

국토안전관리원



에너지소비량 보고 대상 기준



* 6개 용도란?
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기준
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
 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 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
 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
 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**학교** 중 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
 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
 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


보고 대상 에너지원



도시 가스

전기

지역 냉난방 유류

기타

고지서 등 참고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**에너지소비량** 보고



차량 운행을 위한 에너지원(유류 등) 보고 대상 아님



보고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

건축물대장의 용도, 사용승인일, 면적(동별) 확인하여 건축물 현황을 파악한다.



공공기관

비보고대성

사용승인일 10년 미만 또는 동별 면적 3,000m² 미만 또는 용도기준 부적합

관리하고 있는 건축물



※ 동별 면적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의 '건축물 현황' 확인

ⓐ주1 : 면적 합계 4,000 m² → 보고대상 ○

⑥주2: 면적 합계 3.000m² → 보고대상 ○

©주3: 면적 합계 2,000m² → 보고대상 X

@ 부1: 면적 합계 500 m² → 보고대상 X

동별 3,000㎡ 이상 각각 등록

〈건축물대장〉

	건축물 현황				
	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m²)
	주1	지1	철근콘크리트조	업무시설	500.00
a	주1	1층	철근콘크리트조	업무시설	2,500.00
	주1	2층	철근콘크리트조	업무시설	1,000.00
(E)	주2	1층	철근콘크리트조	업무시설	2,000.00
(b)	주2	2층	철근콘크리트조	업무시설	1,000.00
©	주3	3층	철근콘크리트조	업무시설	2,000.00
a	부1	4층	철근콘크리트조	창고	500.00



동별 에너지소비량 보고 방법

OO청사 전체 연면적 7.000m²

(예시1)

·A동 연면적: 4,000 m²

*B동 연면적: 3,000m²

(예시2)

·A동 연면적: 5,000 m²

B동 연면적 : 2,000 m²

A. B동 각각 보고

A동만 보고

※ 여러 개 동에 계량기가 하나인 경우

연면적 비율로 소비량을 나누어 계산

= (계량기 측정값) x (해당 동의 연면적) / (계량기가 연결된 전체 동의 연면적 합계)

(예시1) A동의 경우 @ 전체 전기에너지 사용량: 1,500kWh

ⓑ 건축물 전체 연면적: A동(4,000 m²)+B동(3,000 m²)=7,000 m²

i ⓒ A동 전기에너지 사용량: 1,500kWh x{4,000m²(A동면적)/7,000m²}=857.14kWh



소유 및 관리주체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보고 대상

1. 공공건축물에 공공기관이 일부 또는 전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(합동청사)

예시 1 - 일부 임차 > 00청사 A공공기관 B공공기관 일부임차 (1~2층)

OO청사(A공공기관 소유)에 B공공기관이 일부 임차(1~2층)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

- ⇒ 임차부분이 3.000m²이상 : 임차부분 B기관에서 회신*
- * 단. 합동청사와 같이 A기관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회신이 가능한 경우 A기관에서 회신
- ⇒ 입차부분이 3 000m²이하 : 소유기관인 A기관에서 전체 회신



OO청사(A공공기관 소유)에 B공공기관이 전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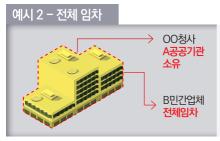
⇒ 사용기관인 B기관에서 회신

2. 공공건축물에 민간이 일부 또는 전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



OO청사(A공공기관 소유)에 B민간업체가 일부 임차(1~2층)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

- ⇒ 민간부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: 민간임차부분 제외한 면적 및 에너지 소비량 회신
- ⇒ 민간부분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회신



OO청사(A공공기관 소유)에 B민간업체가 전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⇒ 소유기관인 A기관에서 회신

3. 민간건축물에 공공기관이 일부 또는 전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

해당사항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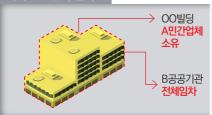
예시 1- 일부 인차



OO빌딩(A민간업체 소유)에 B공공기관이 일부 임차(1~2층)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⇒ 해당사항 없음

예시 2 - 전체 임차



OO빌딩(A민간업체 소유)에 B공공기관이 전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⇒ 해당사항 없음



월별 에너지소비량 보고 방법

에너지 사용기간은 요금 청구 고지서의 발행월이 아닌 실제 에너지 사용월을 기준으로 한다.

예시 1

요금 청구 고지서 발행월: 2021년 4월[2분기]

실제 에너지 사용월: 2021년 3월[1분기]



2021년 3월[1분기] 에너지사용량으로 입력

예시 2

실제 에너지 사용월이 2021년 3월 15일 ~ 4월 14일 일 때



2021년 3월 또는 4월 사용량으로 자체 적용

2021년 3월 15일 ~ 4월 14일 사용량이 3월 기준으로 입력하였으면. 2021년 4월 15일 ~ 2021년 5월 14일 사용량은 4월에 기재하여 **'중복 또는 누락'을 방지**하여야 함



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시스템이란?



사이트주소: http://peis.greentogether.go.kr





※ 로그인 관련

기관별 ID, Password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**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 시 타 건물 담당자가 접속할 수 없습니다**. 따라서 대표 기관별로 하나의 비밀번호를 고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규 건물 등록



※ 에너지소비량 보고



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게시판에 있는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.



공공건축물 **에너지소비량** 보고 및 공개

발 행 처 국토안전관리원 녹색건축센터

홈페이지 http://peis.greentogether.go.kr (공공건축물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시스템)

전 화 055-771-4750, 4835(담당자)

